

#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

#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07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(개정사유)

- 가.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
- 나.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의 원인조사·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진피해조사의 실시,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- 나. 지진피해조사의 시기,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 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다른 시·도의 지원 및 조사단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함. 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진피해조사”란 지진발생 시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지진피해조사단”이란 지진피해조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말한다.
3. “지진피해조사단원”이란 지질·건축·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진피해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진피해조사 실시)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진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규모 5.0 이상의 지진발생 시
2. 규모 5.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·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
3. 해저지진으로 인하여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
4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

5.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지역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(이하 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관련 학회·협회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로 사전에 구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단의 단장(이하 “조사단장”이라 한다)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며,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별표 1 “지진피해조사단 편성기준”에 의한 관련 학회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
2.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조사단장은 지진피해조사 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진피해의 규모 및 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조사단의 임무) 조사단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
2.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3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

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진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6조(지진피해조사 시기)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피해조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

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지진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현지조사)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·지역·인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지진피해조사 계획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장비·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지진피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진피해조사 초동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·완료하고,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점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지진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요청 등)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조사단원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지역본부장은 다른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

지진피해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조사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지원)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지진피해조사단 편성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분 과	자격 및 인원	관련 학회·협회	비 고
지진현상규명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지질학회 - 한국지진공학회 등	
건축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건축학회 등	
교통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교통학회 등	
상·하수도 및 환경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상하수도협회 등	
산업·통신시설	- 대학교수 각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각 2명 이상	- 한국방재협회 - 한국방재학회 - 한국통신학회 등	
수리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수자원학회 등	
원자력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원자력학회 등	
항만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한국해양공학학회 등	
지반·토목시설	- 대학교수 2명 이상 -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2명 이상	- 대한토목학회 - 한국지반공학학회 등	

[별지 제1호 서식]

# **지진피해조사 초동보고서**

## **I. 조사 개요**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
## **II.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**

- 가. 조사내용(피해발생 현황 등)
- 나. 원인분석

## **III.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**

## **IV. 최종결과보고 방향**



# 지진피해조사 최종보고서

---

## I. 조사 개요

- 가. 목적
- 나. 조사기간
- 다. 조사지역
- 라. 조사단
- 마. 주요 조사내용

## II. 지진현황 및 특성

- 가. 지진현황
- 나. 금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

## III. 현지조사 결과

- 가. 지진피해 총괄
- 나. 현장조사 내용
  - 1. 시설별 피해 내용
  - 2. 지역별 피해 내용
  - 3.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
- 다.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

## IV. 지진피해 교훈 및 시사점

## V. 국가지진방재정책 개선방향

## VI. 결론

부록 : 화보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「지진재해대책법」</p> <p>제20조(지진재해 원인조사·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·운영 등)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중앙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중앙본부장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및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<u>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/u>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제10조(경비지원)
-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조사단이 구성되어 지진피해조사를 실시
- 조사단원의 수당, 여비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비용발생이 예상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사단은 상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 지진피해 발생시 운영되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3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## 4. 작성자

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과장 허영수